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2일 15시 13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여성가족과	3
청소년수련시설 (변경)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	3

청소년수련시설 (변경)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

2017.07.04 조회수 223 등록자 한순주
10:40

- ✓
민원사무명
청소년수련시설 (변경)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

- ✓
민원내용
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등록(변경등록) 하여야함.

- ✓
관계법령
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등

- ✓
구비서류

 1. 시설일람표
 2. 운영계획서 1부
 3.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
 4.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1통
 5. 관련 법령 허가서 사본 각1부
 6.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7.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 8. 기타 서류

- ✓
처리부서
여성가족과

- ✓
협의부서

- ✓
접수
여수시청 민원실

- ✓
수수료

- ✓
처리기간

- ✓
기타사항
등록,변경등록 : 18일 / 등록증재교부 : 1일

- ✓
흐름도
①신청서 제출(신청인) → ②접수(여수시청 민원실) → ③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→ ④결재 → ⑤허가처리 통보

- ✓
기타참고사항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

[별지 제8호서식] 청소년수련시설(등록, 변경등록, 등록증재교부)신청서(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).hwp (561 hit/ 20.5 KB) ↓

[미리보기](#)

이전글

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

다음글

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